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57

발의연월일: 2020. 12. 17.

발 의 자: 박홍근·황운하·김주영

김정호・한준호・이용우

이허승 · 강은미 · 이학영

남인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목줄 등을 하게 하고, 맹견의 소유자등에게는 목줄 및 입마개 등을 하도록 하면서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한테 물려 구급 이송되는 사람이 2,0 00명이 넘는 등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맹견을 포 함한 등록대상동물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등 록대상동물의 공격적 기질이나 행동을 평가하여 교정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등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대상동물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등록대상동물의 공격 성향 등을 평가하여 소유

자등에게 행동 교정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도록 하고 소유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 항 및 제47조제1항 신설).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이 사람이나 반려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대상동물의 공격 성향 등을 평가하여 소유자등에게 행동 교정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 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3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행동 교정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
	장은 등록대상동물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해당 등록대상동물
	의 공격 성향 등을 평가하여
	소유자등에게 행동 교정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과태료) <u><신 설></u>	제47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행동 교정 훈련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u>①</u> ~ <u>④</u> (생 략)	<u>②</u> ~ <u>⑤</u> (현행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